

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3호(2006.4.20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목동 909-13외 1필지 획지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16.09.28.)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의거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6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20일

서 울 특 별 시 양 천 구 청 장

1. 변경결정 사유

-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에 대하여 공유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토지이용을 위하여 분할내 용대로 획지를 변경하는 것임.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

1) 획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구번호	획지번호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기정	2	2-4	목동 909-3	641.3	
변경	2	2-4-1	목동 909-13	489.3	
		2-4-2	목동 909-3	152	

-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사항 : 변경내용 없음.

3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(☎02-2620-3530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.

4.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

기 정	변 경
	